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2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- 인천가족공원 매장묘지를 자진 개장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 주고 봉안시설 안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개장 및 화장 촉진
- 한 배우자가 봉안당·자연장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·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하여 시민편의 제공
- 6개월 미만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하며, 군인(의무경찰 포함)등에 대한 화장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참전 유공자, 의사자 등이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미만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관내주민으로 적용(안 제2조)
-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시 관내주민으로 적용(안 제6조 및 별표 2)
- 인천가족공원 안의 묘지를 자진 개장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당·자연장에 대한 최초 사용료를 면제(안 제9조)
-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·외에 거주하다 사망하거나 안치된 다른 한 배우자 합골 허용(안 제9조)
- 인천가족공원 안에 신설된 봉안당(만월당) 추가(별표 1)

- 우리시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(의무경찰 포함) 등이 사망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주민으로 적용(별표 2)

참고자료

-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“관내주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- 가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- 나.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를 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다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른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봉안시설 : 관내주민,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,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
- 2. 화장시설 : 관내주민 및 관외주민
- 3. 자연장지 : 관내주민,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,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

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감면(다만, 보

상분묘는 제외한다.)

가. 화장시설 : 사용료 면제

나. 봉안당 : 최초 10년 면제

다. 자연장지 : 최초 15년 면제

5.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
경우 : 1기 사용료만 징수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(제5조 관련)

종류	명 칭		위 치	비고
공 설 묘 지	비 조 성 묘 지	인천광역시 중 구영중공설묘지	인천광역시 중 구 운북동	
		" 남 구주안공설묘지	" 남 구 주안동	
		" 연수구옥련공설묘지	" 연수구 옥련동	
		" 청학공설묘지	" 청학동	
		" 남동구장수공설묘지	" 남동구 장수동	
		" 도림공설묘지	" 도림동	
		" 운연공설묘지	" 운연동	
		" 논현공설묘지	" 논현동	
		" 수산공설묘지	" 수산동	
		" 서 구경서공설묘지	" 서 구 경서동	
		" 원창공설묘지	" 원창동	
		" 가정공설묘지	" 가정동	
		" 검암공설묘지	" 검암동	
		" 원당공설묘지	" 원당동	
		" 불로공설묘지	" 불로동	
" 왕길공설묘지	" 왕길동			
" 대곡공설묘지	" 대곡동			
"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	" 부평구 부평동			
공 설 묘 지	조 성 묘 지	인천광역시 서구왕길조성묘지	인천광역시 서 구 왕길동	
		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	" 부평구 부평동	
공 설 화 장 시 설	인천가족공원 승화원	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	
공 설 봉 안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·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·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·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·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	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	
공 설 자 연 장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립 	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	

[별표 2]

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(제8조 관련)

1.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

기준면적	기 본 금 액			4.95㎡ 초과사용료
	계	사용료	관리료	
4.95㎡	21,400원	3,600원	17,800원	3.3㎡당 1,200원

2.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

구 분	기준면적	관리료	비 고
계단식 일반조성묘	4.95㎡	30,000원/1년	5년단위로 징수
가족봉안묘	8.26㎡	50,000원/1년	5년단위로 징수

3. 왕길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

기준면적	허가신청서 납부금액		
	계	사용료	관리료
4.95㎡	64,300원	15,400원	48,900원

4. 화장시설 · 봉안당 · 자연장지 사용료

구 분		기 준	관내주민	관외주민	비 고
화 장 시 설	만15세 이상	1구당	60,000원	1,000,000원	
	만15세 미만	"	40,000원	400,000원	
	개장유골	"	50,000원	400,000원	
	죽은 태아(4개월이상)	"	30,000원	300,000원	
봉 안 당	1인용	안치료	150,000원	400,000원	관외주민 사용료는 기 봉안된 관외 주민 만 적용
		재사용료	100,000원	400,000원	
		연장기간	10년(최초) 5년 6회	10년(최초) 5년 6회	
	부부용	안치료	300,000원	600,000원	
		재사용료	200,000원	600,000원	
		연장기간	10년(최초) 5년 6회	10년(최초) 5년 6회	
자연장지	수목장립	안치료	150,000원	-	
		재사용료	75,000원	-	
		연장기간	15년(최초) 5년 5회	-	

비고 : 1.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자(의무경찰을 포함한다) :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

2.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: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0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 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0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“관내주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p> <p>가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</p> <p>나.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를 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</p> <p>다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른 시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</p>
<p>제6조 (사용자의 자격 등)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봉안시설 : 시설사용 신청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관내주민(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시 관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 과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</p> <p>2. 화장시설 : 관내주민(단, 제9조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적용) 및 관외주민</p> <p>3. 자연장지 : 시설사용 신청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와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</p> <p>4. ~ 5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 (사용자의 자격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봉안시설 : 관내주민,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,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</p> <p>2. 화장시설 : 관내주민 및 관외주민</p> <p>3. 자연장지 : 관내주민,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,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또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</p> <p>4. ~ 5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 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관내 주민에 대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 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감면(다만, 보상분묘는 제외한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화장시설 : 사용료 면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봉안당 : 최초 10년 면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자연장지 : 최초 15년 면제</p> <p>5.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: 1기 사용료만 징수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</p> <p>제23조 (공설묘지 등의 사용료·관리비의 부과)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, 시설물 설치·조성비용,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참고자료	“해당 없음”